

## 참고3 신규센터 선정기준(안)

### □ 서면심사

평가 항목	평가 요소
주관기관	경기도 소재 이공계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교 또는 국공립 연구원
참여기관	신청일 기준 본사·공장·연구소가 경기도 소재한 기업
총괄책임자	정규직 교수(부교수 이상) 또는 정규직 연구원(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)
참여제한	10억원 이상 정부사업 총괄책임자 및 정부 등 R&D과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자
연구분야	연구분야와 과제의 일치 및 현재 연구과제 중복여부
전용면적	센터명의를 독립된 사무실과 연구실로 660㎡ 이상(공동사용 공간은 불인정)
연구장비	사업계획서 상 연구 장비 존재 여부

### □ 발표평가

평가 항목	평가 요소	배점
사업목표 설정 (35점)	센터 사업으로서의 필요성	5
	사업목표의 구체성·명확성	5
	고급인력 양성/특허/기술이전 등 성과지표의 타당성	10
	지역산업과의 연계성	5
	단기·중기계획의 적정성	5
	센터의 지역산업발전 기여도	5
연구개발과제 (40점)	연구분야의 창의성 및 집중도	5
	연구결과의 사업화 연계성	10
	총괄과제와 세부과제의 연계성 등 과제구성의 적정성	5
	과제별 연구비 배분의 적정성	5
	과제와 참여기업과의 연계성	5
	연구책임자 및 연구인력의 수준	10
지원 및 운영 체제 적정성 (25점)	센터 운영 체제(센터장 능력/조직구성/독립성 등)	5
	주관기관 연구 환경·지원시설의 적정성 (연구/장비/인력지원, 지원금 지원형태 등)	15
	기업 참여율 및 참여의지(기업 부담금 및 업태 등)	5
도정기여도 (10점)	도 중점 육성분야, 시·군 지역현안 해결 등 도정 연계성	10
가산점 (시비 의무부담 외 시비의 추가 부담<현금>)		10
총 계		120